

강원개발공사 윤리강령(70103)

[2019. 06. 19]
[내규 제333호]

개정 2023. 1. 3. 내규 제468호

개정 2025. 9. 22. 내규 제606호

강원개발공사 윤리헌장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사업을 통해 도민행복 창출과 지역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강원개발공사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도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며 도민의 이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방침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시 법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렴을 생활화하고, 일체의 부정청탁이나 향응·금품 등의 수수를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주인의식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며 직원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강원도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시설 건설 및 다양한 환경 보전활동을 통해 환경친화경영의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 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강령은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 조 (사명완수 및 자기계발) ①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비전 및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②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 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상호간에 사회통념상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멸실 또는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2 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3 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4 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 15 조 (거래법규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 16 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 17 조 (공정거래) ①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8 조 (임직원존중) 공사는 임직원에게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 19 조 (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0 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 21 조 (삶의 질 향상) ① 공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22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사를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 및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9. 22.>

1. 민관협의회 위원은 사장이 된다.
2. 실무협의회 위원은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 23 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4 조 (안전 및 위험 예방)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제 25 조 (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 조 (노사 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28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9 조 (포상 및 징계)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현저히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2.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3.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관련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누설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강령에 저촉된 비도덕적·부패 행위

제 30 조 (윤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사장은 단체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원활한 윤리경영의 추진과 강령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운영위원회는 이 강령에서 규정한 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 조 (강령의 운영) ① 사장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강령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처리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기준)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강령 및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강령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